

瑞山市議政同友會育成支援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2000. 10.19  
總務委員會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發議日字 : 2000. 7. 18
- 나. 發議者 : 文基元 議員 外 9人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0. 9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0. 19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文基元 議員)

### 가. 制定理由

- 현사회가 고도로 전문화·세계화·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가고 있음.
-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및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, 의정동우회를 육성하여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.

### 나. 主要骨子

- 의정동우회 육성 목적은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조).

-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,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(안 제5조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현대사회는 고도로 전문화, 세계화, 개방화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 감에 따라
-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본 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66 호
의 결	2000. . .
년 월 일	(제 호)

##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

발 의 자	문기원 의원의 9 인
발의년월일	2000. 7. 18

#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7. 18  
발 의 자 : 문기원 의원 외 9인

## 1. 제정이유

- 현사회가 고도로 전문화·세계화·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가고 있음.
-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및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, 의정동우회를 육성하여 의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의정동우회 육성목적은 서산시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다.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,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(안 제4조).
- 마.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(안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24조1항

##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산시의정동우회(이하 “의정동우회”라 한다)를 지원·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조금 지원) 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계획의 제출)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결과보고 등) ①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